W - 2 - 2021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

2021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권 섭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나 루, 정 수 진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용 근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0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0년 6월,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3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5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9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1년 0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(GHS) (Sixth revised edition, 2015)
-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-Content and order of sections(ISO 11014-1, 2009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)
- 고용노동부 고시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칙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W - 2 - 2021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,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)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『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』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경고표지"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는 것(이하 "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"이라 한다)에 관한 적절한 문자,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, 컨테이너,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고정,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.
 - (나) "물질안전보건자료"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·수입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 안전·보건·환경에 관한 유해·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 요령 및 독성정보 등 16가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 자료를 말한다.

W - 2 - 2021

- (다) "물리화학적 특성"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외형, 물리적 상태, pH, 물리적 상태 변동에 따른 온도변화, 인화점 및 폭발특성 등을 말한다.
- (라) "신뢰성"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 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의도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어야하는 형 식과 내용의 일정한 품질 수준을 말한다.
- (마) "유해성·위험성"이란 당해 화학물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성 및 노출에 의한 위험적인 특성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적용 대상

고용노동부 고시『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』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을 분류하여 16개 세부항목으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.

5. 신뢰성 평가의 점검표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양식은 <별표 1>과 같다.

6. 신뢰성 평가의 원칙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·취급·사용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작성한 단일 화학물질과 혼합 화학물질에 대한 구성 성분과 함유량 분석결과에 의한 구성성분의 일치율(%) 평가, 인화점 등의 물리

W - 2 - 2021

화학적 특성 시험결과에 의한 기재된 정보값의 변이 분석, 고용노동부고시 『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』에 따른 세부항목별 일치율(%)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.

7. 신뢰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

(1)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선정

신뢰성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의 선정은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.

- (가) 직업병 발생물질
- (나) 독성물질
 - ① 급성 경구와 흡입의 급성독성 값이 낮아 고독성인 물질
 - ② 피부·눈 부식성 및 자극성이 높은 물질
 - ③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물질
 - ④ 발암성·변이원성·생식독성이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물질
 - ⑤ 표적장기ㆍ전신 독성 물질 및 흡인유해성 물질 등
- (다)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과 화재·폭발·반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
 - ① 폭발성 물질, 자기 반응성 및 발열성 물질, 자연 발화성 액체·고체, 유기과산화물
 - ② 인화성 가스·액체·고체 및 에어로졸

- ③ 산화성 가스・액체・고체
- ④ 물반응성 물질, 금속부식성 물질
- ⑤ 고압가스 등
- (라) 국내 유통량과 사용량이 많으며, 취급 근로자가 많은 물질 등
- (2) 채취시료의 분석 및 시험
- (가) 구성성분에 대한 정성분석 및 함량의 정량분석은 다음의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.
 - 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(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)
 - ② 가스크로마토그래피(Gas Chromatography)
 - ③ 이온크로마토그래피(Ion Chromatography)
 - ④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(High Perfermance Liquid Chromatography)
 - ⑤ 기타 구성성분의 정성·정량분석이 가능한 분석 장비
- (나) 물리화학적 특성시험은 다음의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.
 - ① 인화점시험기
 - ② 비중측정기
 - ③ 녹는점 측정기
 - ④ 증기압 측정기

W - 2 - 2021

- ⑤ 점도 측정기
- ⑥ 자연 발화 및 분해온도 측정기
- ⑦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(HPLC)
- ⑧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시험이 가능한 시험 장비
- (3)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율 평가

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일치율의 평가는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일치율 평가와 16 개 항목의 91개 세부 항목에 대한 일치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(가) 제품의 구성성분 일치율 평가

평가 대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정성·정량분석 결과에 의한 구성성분의 일치율 평가는 <별표 2>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(나)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 91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신뢰성의 일치율 평가

평가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<별표 1>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와 비교하여 16개 항목, 91개 세부 항목을 적합, 부분적합,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표 3의 평가계수와 계산식을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일치율을 평가한다.

- (4)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수정 · 권고안 작성
 - (가)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와 비교하여 부분적합, 부적합으로 지적된 항목을 중심으로 <별표 4>의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정·권고사항을 안내한다.

W - 2 - 2021

- (나) 제품의 성분분석과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Database를 이용하여 구성성 분에 대한 잠재적 유해·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 잠재적 유해·위험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Database는 다음과 같다.
 - ① ACGIH: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,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
 - ② REGULATION (EC) No 1272/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,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,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/548/EEC and 1999/45/EC, and amending Regulation (EC) No 1907/2006
 - ③ IARC: MONOGRAPHS ON THE IDENTIFICATION OF CARCINOGENIC HAZARDS TO HUMANS
 - ④ Jap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(NITE). Chemicals Management Information GHS classification information
 - ⑤ Korea National Fire Agency

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-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.

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.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-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.

- 6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:
 Tox-info(Toxicity information service system)
- 7 Merck & CO., INC.: The merck index
- ®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(OECD):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(SIDS) report

- (9) United Nations: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(UN RTDG)
- ① U.S.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(EPA) : ECOTOX(ECOTOXicology) database
- ① U.S.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(EPA):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(IRIS)
- ① U.S. National library of medicine(NLM): databases & electronic resources (ChemIDPlus & HSDB)
- ③ U.S. National Toxicology Program(NTP): report on carcinogens(RoC)
- (4) WTO/IPCS & ILO: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
- ⑤ 기타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database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등제된 최신 연구논문
- (다)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데이터가 측정 불확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시험 결과값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·권고안을 제시한다.

<별표 1>

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

	검 토 항 목	검토항목 주요검 토 내 용		제 품 명				
1.	1.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							
가	제품명	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명칭 또는 분류코드의 기재내용 (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의 기재여부)						
나	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제품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주요 사용용도 및 사용 제한 내용						
다	공급자 정보	회사명, 주소, 긴급 전화번호의 기재내용 (제조자, 수입자,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 임지는 회사 정보의 기재여부,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기재여부)						
2.	유해성·위험성							
가	유해성·위험성 분류	GHS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성·위험성(물리적 위험성, 건강 유해성, 환경 유해성)과 구분을 함께 나열(예, 인화성 액체 구분1)						
나	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	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, 신호어, 유해.위험 문구, 예방조치문구의 기재내용						
다	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.위험성(예, 분진폭발 위험성)	분진폭발 위험성, 질식, 동결 등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.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여부						
3.	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							
가	화학물질명	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여부 및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기재내용(첨가제, 00계)						
나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화학물질의 관용명 및 이명을 기재하고, 이명이 없는 경우 "해당없음"의 기재여부 및 일반명칭,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기재내용 등						
다	CAS 번호 및 식별번호	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 번호의 기재여부						
라	함유량(%)	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내용						

	7) F = 1 D	T 0 7 5 1 0	7	데 품 명	
	검 토 항 목	주요검 토 내 용			
4.	응급조치 요령				
가	눈에 들어갔을 때	"눈을 적어도 15분간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 냄.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함"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내용			
나	피부에 접촉 했을 때	"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.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. 의료조치를 취할 것"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내용			
다	흡입했을 때	"깨끗한 공기로 제거함. 숨 쉬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함. 의료 조치를 취함"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내용			
라	먹었을 때	"구토를 시키지 말 것. 우유나 물을 줄 것.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.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것"같은 표준문구 등으로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내용			
마	기타 의사의 주의사항	가능하다면 지연성 영향에 대응한 임상검사, 의학적 감시, 해독제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제고 내용			
5.	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			·	
가	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	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한 소화기에 대한 기재내용			
나	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	NFPA 지수를 비롯하여 연소 시 화학물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성 등의 기재내용			
다	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	소화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보호 장비의 기 재내용			

	 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	제	품 명	
	김도 양국	[도 네 용 			
6.	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				
가	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	누출 사고시 피부, 눈,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, 착화원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방법,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과 같은 응급 시 사람을 보호할 절차의 기재내용			
냐	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	"하수구, 지표수,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"등 화학제품의 누출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환 경상의 예방조치 기재내용			
다	정화 또는 제거 방법	중화, 흡착 등 정화방법과 정화 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 및 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에 의한 유해·위험성의 기술, 그 예방기법에 대한 기재내용			
	취급 및 저장방법				
가	안전취급요령	노출방지기법/화재폭발 방지기법과 같은 기술적 대책 및 에어로졸 생성/분진생성을 방지할 국소배기장치와 전체 환기시스템 등의 작업환경개선기법, 취급시 피해야할 물질 또는 안전한 취급조건, 환경에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기재내용			
나	안전한 저장 방법 (피해야할 조건을 포함 함)	안전한 저장조건, 피해야할 조건, 적정한 포장용기의 재질, 가능하면 저장장소나 저장탱크의 안 전설계와 설계형태 또한 저장과 관련된 저장분류 사항이나 등급사항, 저장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 등의 기재내용			
8.	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			·	·
가	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 준 등	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한 노출기준, ACGIH-TLV/STEL/Ceiling, OSHA-PEL, NIOSH-REL 및 기타기준을 기재내용 및 기재 할 노출기준이 없는 경우 "해당 없음"의 기재여부			
나	적절한 공학적 관리	제7항에 보충하여 제품의 의도된 사용형태와 관련, 작업근로자의 노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공학적 관리 방법이 언제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의 기재내용			
다	개인보호구	피부, 눈, 호흡기의 노출방지를 위해 장갑, 보호의 등에 대한 종류 및 재료, 재료의 두께 및 파과시간 등의 기재내용 및 고열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한 보호구의 기재 내용 ○ 호흡기 보호 : 사용하여야 할 호흡기 보호구 종류의 적합한 기재여부 ○ 눈 보호 : 사용하여야 할 눈 보호구 종류의 적합한 기재여부 및 다량 사용 장소에서의 눈 세척시설의 설치권고 여부 ○ 손 보호 : 사용하여야 할 손 보호구 종류와 재질의 적합한 기재여부 ○ 신체보호 : 사용하여야 할 보호앞치마와 장화 등의 재질과 작업복 등의 적합한 기재여부			

거도하모	74 F 111 O	제 품 명				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					
9. 물리화학적 특성						
가 외관	색상, 상온.상압 또는 저장시의 고/액/기상 등의 물리적 상태 기재내용					
나 냄새	냄새의 특성 등의 기재내용					
다 냄새역치	냄새 역치를 ppm등의 단위로 기재하고,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으로 기재 여부					
라 pH	pH의 경우 부식성물질의 분류 기준으로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시키는 물질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정확히 기재					
마 녹는점/어는점	상온.상압에서의 녹는점/어는점이나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인화성물질의 기준이 되는 상온.상압에서의 초기 끓는점이나 그 범위 또는 유용한 자료 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사 인화점	인화점의 기재 및 인화가능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"해당 안됨"보다는 최저 인화가능 온도의 기재 또는 "인화가능성 없음"으로 작성된 내용					
아 증발속도	물질의 증발속도를 기재하고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으로 기재내용					
자 인화성(고체, 가스)	고체, 가스상의 물질의 인화 가능성과 조건의 기재 또는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 없음"의 기재여부					
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화학물질의 인화 또는 폭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폭발범위의 기재내용					
카 증기압	증기압의 수치를 온도조건과 함께 mmHg의 단위로 기재 또는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타 용해도	물에 대한 용해도를 실험온도 조건과 함께 기재. 유용한 수치가 없는 경우 "불용","약간용해", "자료없음"등의 기재여부					
파 증기밀도(공기=1)	포화상태의 공기밀도를 "공기=1"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하 비중(4°C의 물=1)	액체의 경우 4°C의 물을 기준으로 한 비중을 소수점 1~3자리까지 기재. 고체인 경우 "고 체로 해당없음"으로 기재된 내용					
	n-옥탄올/물 분배계수의 기재 또는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너 자연발화온도	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재하고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더 분해온도	화학물질의 분해 온도를 기재하고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러 점도	점도와 온도 등의 실험조건을 함께 기재하고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머 분자량	혼합물 등으로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혼합물로 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
	-1 -1 -			7	데 품 명	
검 토 항 목		검 토 내 용				
10.	안정성 및 반응성					
가	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	표준기압 및 예상되는 보관·취급 온도·압력 조건에서의 안정 여부, 불안정한 경우는 그 조건(온도/압력 등)과 그에 따른 유해·위험성(열방출/압력/폭발/분해/중합), 산화/환원/중합 반응 등의 유해반응의 발생 가능성의 기재내용				
나	피해야할 조건 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	유해·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, 충격, 화염, 마찰, 스파크,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의 기재내용				
다	피해야 할 물질	제품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(예, 폭발, 유해가스 방출, 과량의 열 발생)을 유발하는 화학물 질 군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기재내용				
라	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	사용, 보관, 가열의 결과 충분히 예상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의 기재내용				
11.	독성에 관한정보					
가	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관한 정보	제품의 가능성 있는 노출경로 및 각 경로로의 노출 시 흡수에 따른 영향의 기재내용				
나	건강유해성 정보	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,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의 내용 급성독성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흡인 유해성				

		검 토 내 용	제 품 명				
	검 토 항 목				네 곱 의	<u> </u>	
12.	환경에 미치는 영향						
가	생태독성	어류, 갑각류, 조류, 벌, 식물 등 수생 또는 육생 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과 관련된 모든					
		이용 가능한 자료,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재내용					
나	잔류성 및 분해성	분해반감기 등 산화 또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서 분해 되는 잠재력의 기재내용					
다	생물 농축성	옥탄올/물 분배계수(log Kow), 생물농축계수(BCF) 등 생물상에 농축되어 식물 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의 기재내용					
라	토양 이동성	흡착/침출 시험 등의 적정한 이동성자료, Kow 등을 통하여 예측된 환경에 방출되어 지하수 또는 방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의 기재내용					
마	기타 유해 영향	가능하다면, 환경 내 운명, 오존층 파괴 가능성,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, 내분비교란물질 가능성, 지구 온난화 가능성 같은 환경에 대한 기타 유해영향의 기재내용					
13.	폐기시 주의사항						
가	폐기방법	폐기물 관리법이나 외국의 관련법상 적절한 폐기방법을 기재 또는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"자료없음"의 기재여부					
나	폐기시 주의사항	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					
		사항을 기재하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"해당 없음"의 기재여부					
11	함함) 으소에 피스하 저브	외국의 관련법(미국의 RCRA/SARA/CERCLA 등 사항도 기재권장)					
	운송에 필요한 정보	O에 마리크취에 이는 O에비크/마리 파트 이제표 크 O이 4만이 비크/이 키케케이					
가	유엔 번호	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(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)의 기재내용					
나	유엔 적정 선적명	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선적명의 기재내용					
다	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유엔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서 화학제품의 운송 등급(및 부가적 등급)의 기재내용					
라	용기등급(해당하는 경우)	위험의 정도에 따라 특정물질에 할당된 유엔 모델규칙에 의한 용기등급의 기재내용					
마	해양오염물질 (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)	IMDG-code에 해양오염물질 여부, 유엔 모델규칙, ADR, RID, ADN에 의한 환경유해성의 여부의 기재내용					
바	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 책	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와 관련된 정보 의 기재내용					

W - 2 - 2021

	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	제 품 명
15.	법적 규제현황		
가		제조등금지물질, 허가대상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별관리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,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,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, 노출기준설정유해인자, 위험물질, 공정안전보고서(PSM)제출 유해 위험물질, 법에 의한 위험물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(규정수량 및 관리에 관한 정보 포함)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내용	
나	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	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내용	
다	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	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기재내용	
라	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	폐기물관리법 상에서 규정하는 폐기방법의 기재내용	
마	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	기타 국내에서 규제하는 법규 및 취급방법, 몬트리올 의정서, 스톡홀름 조약 또는 로테르담 협약 등 국 제적 통용 규제 정보, 주요한 각국의 규제상황의 기재내용	

※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 점검표 작성요령:

- 적 합(○):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내용이 모두 적합한 경우 (일치율 평가계수 : 1)
- 부분적합(△):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내용이 일부만 적합한 경우 (일치율 평가계수: 1/2)
- 부 적 합(x):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내용이 모두 부적합한 경우 (일치율 평가계수: 0)

<별표 2>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구성성분 일치율 계산식

구성성분의 일치율(%) =

- ※ 일치율(%)이 100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.
- ※ 정성·정량분석 결과 검출이 확인된 물질의 평가 한계는 발암성물질, 생식독성물질, 세포변이원성 물질의 경우 0.01%이상 함유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, 기타 그외의 물질은 0.1%이상 함유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.

<별표 3> 물질안전보건자료 신뢰성 평가를 위한 일치율 평가계수 및 계산식

1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계수

구분	세 부 내 용	표기방법	평가계수
적합	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내용이 모두 적합한 경우	0	1
부분적합	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내용이 일부만 적합한 경우	\triangle	1/2
부적합	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내용이 모두 부적합한 경우	X	0

2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율의 평가 계산식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율(%) =

※ 일치율(%)이 100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.

<별표 4>

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정·권고사항

одиј	योह्य । व योग्स	물질안전보건	자료 검토결과	71 O
연번	제조사 및 제품명	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	수정.보완 필요사항	사 유

지침 개정 이력

- □ 개정일 : 2021. 10.
 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용근
 - 개정사유 : 국내외 법규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 반영
 - 주요 개정내용
 -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 - UN GHS (Sixth revised edition, 2015) 반영